#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1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신정훈·문진석·김경만

서삼석 · 윤재갑 · 김정호

조오섭 · 강선우 · 김원이

이상헌 · 김민철 · 김성주

권칠승・황운하・박영순

김회재 · 서동용 · 이용빈

송영길 · 이병훈 의원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기한 도래를 앞둔 상황임.

또한 폐광지역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감소 추세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후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2012년 개정 이후 정체된 기금납부금 한도를 상향하여 폐광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폐광기금 용도의 확대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계약시 제한입찰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내국인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동법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할 관리 방안도 부재함.

이에 이 법의 일몰을 폐지하고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납부율을 상향하여 지역 배분금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특례 및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할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 5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25"를 "35"로, "지역개발을"을 "지역개발, 신·재생에 너지 전환·보급을"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5(폐광지역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5항에 따라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법률 제5089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⑤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 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 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 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 지역개발, 신·재생에너지 전환· 여야 한다. 보급을-----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폐광지역 관광진흥 및 <신 설> 지역개발 지원에 대한 실태조 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1조제5항에 따라 폐광지 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 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신 설>

법률 제5089호 廢鑛地域開發支援 에관한特別法 부칙 ②(適用時限) 이 法은 2025년 1 | <삭 제> 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有效期間만료에 따른 經過 措置) 이 法의 適用時限만료당 시 振興地區의 開發計劃에 따 라 진행중인 開發事業 및 진행

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 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 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제9조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법률 제5089호 廢鑛地域開發支援 에관한特別法 부칙

<삭 제>

중인 支援措置에 관하여는 그 진행중인 開發事業 및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法을 적용한다.